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3. 4 선고 2020가단1284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21. 1. 14

판결 선고 2021. 3. 4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5,696,089원 및 그 중 2,697,815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6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5,696,0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5,696,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피고 B은 2002 . 4. 22. 주식회사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2015 . 5. 26.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
피고 B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납부를 연체하였고, 원고는 2019. 8. 12.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및 대출금채 권을 양수하고,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2020 5. 26. 기준 위 각 채권의 액수는 합계 5,696,089원(= 원금 2,697,815원 + 연 23.7%로 계산한 연체이자 2,998,274원)이다.

나. 피고 B은 2016. 6. 30.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으며, 이로써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.

다.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.

라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5,696,089원 및 그 중 2,697,815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.

마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6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에 해 당하므로, 공동담보가액 인 7,208,340원과 피보전채권액 인 5,696,089원 중 더 적은 금액인 5,696,0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바.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,696,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

앞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병훈

별지